

##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통지서

### ■ 사업장 현황

|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|
| 사업장<br>관리번호     |         | 사업장명    |  |
| 대 표 자<br>(생년월일) | ( . . ) | 상시근로자수  |  |
| 소 재 지<br>(전화번호) | ( - )   | ☎ ( ) - |  |

### ■ 인정취소 명세

| 재해예방활동 | 재해예방활동 인정<br>일 | 인정유효기간 | 인정 취소일 | 인정 취소 사유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|

귀 사업장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8항에 따른 인정 취소사유에 해당되어,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취소하였기에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고용노동부 ○○지방노동청(지청)장

직인